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효된 형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 제한〉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7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실효된 형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 제한 ..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13.
3. 회 부 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실효된 형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등을 회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회보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은 회보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u>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¹⁾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제8호),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²⁾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9호).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조³⁾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10. (생략)
 -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

그에 대한 회보가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에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안 제6조제5항은 현행법 제6조제1항제5호의 보안업무 관련 신원조사⁴⁾를 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를 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 제6조제1항제5호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회보의 적용범위가 결정되고,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개정안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법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 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5) 「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

- 즉 현행법 제6조제1항제5호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안 제6조제5항의 예외범위가 문언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

○ 한편, 법원행정처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려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 제6조제5항이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회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5호에 대해서만 별도의 항을 만들어 위임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법체계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

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